

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 지원 제도



1.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(2019.3월 시행)

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

■ 지원 대상

- ①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② 만 18~34세 청년
③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(생애 1회 지원)
- (졸업·중퇴 후 기간)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졸업·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
- * 졸업 후 2년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 필요

■ 지원 내용

- 월 50만원 6개월 지원
- *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→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취업성공금 지급

취업성공금 제도

- ① 지원금 수급 중 취업(단, 지원금 6개월 분 수령자 제외)
- ②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
- * (취업의 기준)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일 것, 다만 직접일자리사업, 공무원 등 제외

○ 지원 방식

- ①유형·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,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
- * (절차) 카드 신청·발급(청년·카드사) → 포인트 지급(카드사) → 포인트 사용(청년) →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(고용노동부)

■ 지원 절차 ('19.3월부터 시행)

-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·월별 인원을 할당하여 매월 선정,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
- ① (월별 물량 쿼터제 실시) 매월 인원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참여 대상을 선정
- ② (참여 제한기간)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·중단 후 6개월이 지나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에 참여 가능
- ③ (접수 방법) 온라인 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를 통해 접수



김해고용복지+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(T. 055-330-6401)
양산고용복지+센터 취업성공패키지(T. 055-379-2465)
밀양고용복지+센터 취업성공패키지(T. 055-350-2804)



2.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

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,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

■ 지원 대상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의 중소, 중견기업
- *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~5인 미만 기업도 가능
- * 월 급여총액 500만원초과자 및 주30시간 미만자 가입불가

■ 지원 요건

- ① 만 15~34세이하 청년*을 정규직으로 채용**
- * 군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, 최고 만39세까지 가능
- ** 생애 최초 고용보험 취득자 및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이하 자(2년형, 3년형 선택 가능)
- *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(2년형만 가능)
- ②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
- ③ 취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 완료

■ 지원 금액 [1, 6, 12, 18, 24, (30, 36)개월 단위 지원]

- (기업) 2(3)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(750)만원 지원
- * 기업은 상기 지원금 중 400(600)만원을 청년에게 적립
- (청년) 2(3)년간 취업지원금 900(1,800)만원 적립
- * 청년은 본인이 별도로 300(600)만원을 적립

※ 지원상세내역

(단위: 만원)

구 분	취업 지원금 ①	채용유지 지원금		본인 적립액 ③	총 적립액 ②+③+④
		기업 순지원금	기업 기여금④		
2년형	900	100	400	300	1,600
3년형	1,800	150	600	600	3,000



(주)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(T. 055-723-2042)
퍼스트인잡(주) 김해지점(T. 055-723-2488)
양산상공회의소(T. 055-386-4003)



3.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

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

■ 지원 대상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- * 중견기업: 중견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
- *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 청년창업기업 등은 1~5인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
- * 고용보험, 국가, 지자체 지원은 중복 제한되나, "청년 내일채움공제" 지원과 중복지원 가능

■ 지원 요건(*'18년도부터 기지원 사업장은 '18년도 기준에 따라 지원)

- ① '19.1.1이후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(만 15~34세)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
- 30인미만: 청년 1명이상, 30~99인: 2명이상, 100인이상: 3명이상

- * 신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월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

- ② 기업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 증가
- 2018년도 매월말일 기준 "연 평균 피보험자수"보다 청년채용후 기업전체 근로자수(피보험자수) 증가(월 증가 인원 범위 내 지원)
- * 2018년 연 평균 피보험자 수 계산시 소숫점이하 버림

③ 월 임금이 1,745,150원(최저임금 수준) 이상

- * 지원제외: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, 4대보험 미가입자,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,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자, 채용일 현재 고교·대학 재학 중인 자, 사업주의 배우자·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, 외국인, 채용일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■ 지원 금액(3개월 단위 신청·지원)

-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(최초 지원대상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간, 최대 90명 한도)



김해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30-6437)
양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79-2430)
밀양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(T. 055-350-2804)